풍암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

심 사 보 고

1997년 5월
기획총무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제안자 : 1997년 4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5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6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1997년 5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윤대우>

가. 제안사유

○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에서 건설부 고시 제212호('91. 4. 24)에 의한 풍암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 서로다른 행정구역(서구 풍암동, 매월동, 금호동)이 병존하여 사업준공후 입주민의 원활한 행정편익 제공을 위해 기존 동 경계외 35M 광로를 기점으로 금호동과 풍암동의 경계를 삼고자 하며,

○ 매월동 부분중 금호동에 인접한 곳은 금호동에, 풍암동에 인접한 곳은 풍암동에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동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법정동 경계 조정현황

조정전 법정동	조정후 법정동	필지수	면 적	비 고
계		86	85,147㎡ (25,757평)	면적은 구적에
풍 암 동	금 호 동	30	23,654㎡ (7,155평)	의한 개략적
매 월 동	금 호 동	40	52,512㎡ (15,885평)	
매 월 동	풍 암 동	16	8,981㎡ (2,717평)	산출치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종근)

○ 풍암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법정동)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은

○ 건설부고시제212호('91. 4. 24)에 의한 풍암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에 따라 토지 지균작업으로 인한 현지 법정동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 35M광로를 기점으로 동간의 경계를 명확히하여 금후 입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각종 공부(주민등록,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충분히 검토후 의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의 견 서

건설부고시 제1992-774('92.12.28)호로 개발계획승인, 광주광역시고시 제1996-127('96.10. 7)호로 개발계획변경승인된 풍암지구 택지개발사업내 일부필지 풍암동 571번지외 29필지(23,654㎡), 매월동 122번지외 55필지(61,493㎡)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하여 검토결과,

○ 풍암택지개발지구 확정으로 당초 경계대로 확정시 1필지가 2개동으로 접하게 되어 동간의 경계산만과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기존 동 경계외 35m 광로를 기점으로 매월동 부분중 금호동에 연접한 곳은 금호동에, 풍암동에 연접한 곳은 풍암동에 편입 동간 경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한 행정구역(법정동경계) 조정은 주민편익을 위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997. 5. 2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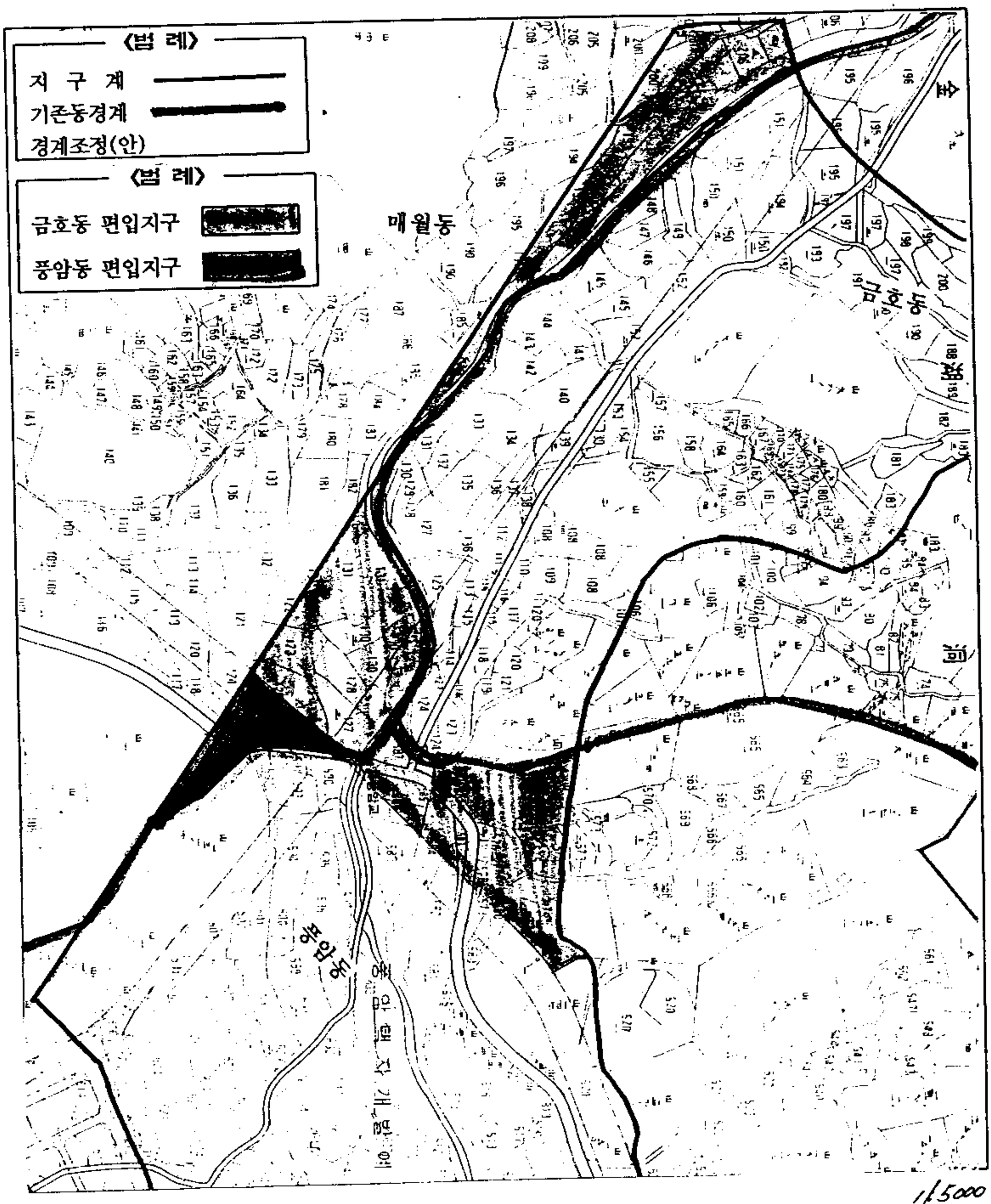
풍암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